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도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3월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강**	강** 1960-03-0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3길	재등록
이**	이** 1967-11-0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재등록
이**	이** 1969-09-1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재등록
설**	설** 1970-05-03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섬바위칠전로	재등록
천**	천** 1976-01-28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역길	재등록
김**	김** 1990-01-0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민지 문의전화 : 061-540-6523)

2018년 03월 15일

진도읍장 인